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성북!

성북구





수신자 성북구 장위동 149-5 박금성 외 22인 귀하 (경유)

제목 민원 회신 (장위5구역)

- 1.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
- 2. 선생님께서 2014.12.24.자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은 장위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41조 및 제42조에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증거서류 및 공탁금 증서, 사본, 2개 감정평가 기관, 평가금액 등의 제시와 제42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리처분총회 무효로서 관리처분 인가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
- 3. 조합정관 제41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(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)을 적용한 조항으로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,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임을 재차 알려드리며, 이는 종국적으로 공사착공 전까지 이행할 사항이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.
- 4. 아울러, 제42조(분양통지 및 공고 등)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며, 성북구 고시 제2014-199호(2014.12.2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신문 공고 사본 1부. 끝.

성북구청장

주무관	이일순	뉴타운사업1담당	강우균	주거정비과장	정택근	도시환경국장	01/02 김장수	
협조자								
시행 주거	정비과-30	()	접수		()
우 136-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http://www.seongbuk.go.kr 전화 02-2241-2832 /전송 02-2241-6545 / august@sh.go.kr / 대시민공개								